

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1-75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, 동법시행령 제11조, 동법률시행규칙 제35조, 제37조, 제42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보험 종류의 명칭, 약관,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1년 12월 28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체국보험 약관, 보험료, 환급금 등 고시

우체국보험의 종류는 [별표 1], 우체국보험약관에 관한 세부내역은 [별표 2], 우체국보험의 종류별 가입요건·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[별표3] 과 같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(단,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은 2012년 1월 1일, (무)만원의행복보험은 2012년 1월 2일 시행)하고,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1- 70호는 폐지한다.